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3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이인영・이기헌・손명수

박상혁 • 한정애 • 이정문

강준현 • 전진숙 • 김영진

백승아 • 이연희 • 김성회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금융소비자가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는 수익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융상품의계약 체결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기 어려우며,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게시되는 금융상품의 수익률은 그 계산방법이 상품마다 다르게 사용되어 금융소비자가 투자판단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교 공시되는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 수익률을 포함하여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투자판단 지표로서 수익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등).

법률 제 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비교공시 등"을 "비교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이자율
- 2. 보험료
- 3. 수수료
- 4. 수익률
- 5.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 및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범위,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다.

제5장제1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① 제32조(금융상품 비교공시) (1)(현행과 같음) (생 략) ②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의 로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주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의 금융소비자 보호실태를 평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1. 이자율 있다. 2. 보험료 3. 수수료 4. 수익률 5. 그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계약 체결 여부를 판 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 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비교공시의 효율적 운영 및 투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명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 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 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 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 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융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 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의 범위, 내용 및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절차, 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④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비교공시를 하는 때에는 금융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게시하여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 한 사항 외에 비교공시의 범위,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실태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등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 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 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 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라 한 다)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 의 절차, 제2항에 따른 금융소 비자보호기준의 내용 및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